

의안번호	2209349
의 퇴 인	이언주 의원
회 답 일	2025. 6. 5.
추계번호	25A192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구성 등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100만원, 2031년 1,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500만원(연평균 1,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40	—	—	—	—	40	8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안 제6조)	11	11	11	11	11	55	11
합 계	51	11	11	11	11	95	19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첨단 선박 실증센터의 설립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하여 첨단 선박 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첨단 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실증센터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4	안 제9조(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을 위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선박 관련 기술 및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에 대한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실증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1. 실증화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및 운영 － 2. 실증화에 필요한 장비·시설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 3. 실증화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 4. 그 밖에 실증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5	안 제11조(첨단 선박 심의위원회)	○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첨단 선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첨단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정부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첨단조선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조세상·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첨단조선업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1. 첨단 선박의 개발·건조·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시험 설비 등의 구입 － 2.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 3. 첨단 선박의 해외시장 진출 － 4. 그 밖에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3항) ○ 정부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첨단조선업자에게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4항)	
7	안 제14조(우선구매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내국법인이 건조한 첨단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 선박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첨단 선박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15조(첨단 선박 구입·개조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국법인인 첨단조선업자가 건조한 첨단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첨단 선박의 구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16조(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첨단조선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을 위하여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7조(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업 관련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이하 “스마트야드 구축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 1. 스마트야드 구축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 2. 스마트야드 구축등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의 개발 및 출시 - 3. 그 밖에 스마트야드 구축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추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11	안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국가는 첨단조선업 분야 숙련기술을 보유한 내국인 전문인력을 유지·관리하고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20조(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3	안 제21조(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제공 - 2. 무역거래 알선·중개 및 컨설팅 지원 -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지원 - 4.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외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 6.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14	안 제22조(재고확대 권고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조선업자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음(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유지·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5	안 제23조(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 정부는 첨단조선업자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조 또는 용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6	안 제24조(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 국가는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이하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이라 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	—
2	안 제6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	—
3	안 제7조(첨단 선박 실증센터의 설립 등)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조선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첨단 선박의 실증화 추진을 위한 사업, 첨단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9조(첨단 선박의 실증화 추진을 위한 사업)	X	
5	안 제11조(첨단 선박 심의위원회)	X	
6	안 제13조(첨단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X	
7	안 제14조(우선구매 등)	X	
8	안 제15조(첨단 선박 구입·개조 등에 대한 지원)	X	
9	안 제16조(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 등)	X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7조(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등)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조선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을 위한 사업, 첨단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11	안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X	
12	안 제20조(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X	
13	안 제21조(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X	
14	안 제22조(재고확대 권고 등)	X	
15	안 제23조(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X	
16	안 제24조(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X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의 조선산업 관련 재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제정안	세부사업(내역)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안 제9조(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을 위한 사업)	친환경선박전화대응미세먼지저감성능평가기반구축	3,000	3,000	6,000	4,740
	중대형선박하이브리드추진시스템육상실증기반조성	500	3,500	3,150	1,700
	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	—	—	—	500
안 제13조(첨단 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33,610	26,508	38,541	66,84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12,500	12,000	9,120	3,910

제정안	세부사업(내역)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해양플랜트스마트해체기술개발)	1,050	1,050	—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 구축)	3,550	3,180	—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	—	12,866	23,00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액체수소온반선상용화기반기술 개발)	—	—	4,500	3,375
	IOT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개 발	832	1,248	500	1,000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	3,280	5,298	2,533	2,533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 실증기반구축	7,033	5,817	740	—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 개발및실증	2,820	2,688	1,295	3,083
	친환경선박 수리·개조플랫폼 고도화 지원	—	600	2,728	2,822
안 제17조(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등)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선박해양의장설계디지털전환핵 심기술개발)	—	—	2482	500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선박소부재생산지능화혁신기술 개발)	—	—	4216	727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해양모빌리티스마트페인팅시스 템기술개발)	—	—	5500	648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조선산업생산협업디지털전환기 술개발)	—	—	—	3,290
	중소조선스마트생산혁신지원	5,100	4,000	4,000	4,000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 전환(IDX)지원	—	1,235	2,450	2,263
	조선해양기자재디지털협업플랫 폼구축	—	400	1,300	1,300

제정안	세부사업(내역)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안 제18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	—	4,800	5,240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조선산업현장전문인력양성)	16,280	8,000	4,000	4,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비용추계 대상은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
- 제정안의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하여 동 계획의 수립에 4,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 유사 연구사례로는 「조선산업 시장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4,500만원), 「글로벌 선박기자재기업의 성공요인 및 우리 조선산업에 주는 시사점 분석」(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4,000만원),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법안 연구」(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년, 4,000만원) 등
 - －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40	—	—	—	—	40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안 제6조)

□ 비용추계 대상은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으로 함

- 제정안은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원을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 수는 과반인 11명으로 가정함

- 동 전략회의는 심의·조정 안건을 고려하여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동 전략회의 심의조정 안건은 다음과 같음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 선박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첨단 선박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에 따라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둘 경우 향후 5년간 총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안 제6조)	11	11	11	11	11	55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